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50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일준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9.
3. 회부연월일 : 2025. 12.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차·방치 문제,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사회적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여 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¹⁾에 대한 처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고,¹⁾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자 및 그 고용주등에 대한 벌칙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동일한 수준인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제153조(벌칙)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1)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형벌이고(「형법」 제67조), 구류는 수형자를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단기간의 자유형임(「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제2항)

출처: 신동운, 「형법총론」 제5판 769면·770면, 법문사, 2010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형의 집행) ②구류는 경찰서유치장·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u>2의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u> 3.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② (생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생략)	5의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4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생략)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삭제> 3.·4.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u>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u> 6. ~ 9. (생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2의2. (생략)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6. ~ 9.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 ----- -----. 1. ~ 12의2. (현행과 같음) <삭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가 신설된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7371호, 2020년 6월 9일 공포, 2020년 12월 10일 시행) 제43조는 무면허운전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했으나,²⁾ 2021년 1월 12일 공포되고, 같은 해 5월 1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7891호) 제4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여³⁾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인 개인형 이동장치도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결한 2020년 12월 법안 소위원회에서는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되 그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준비될 때까지는 원동기 면허를 받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를 별도로 준비해서 시행이 되면 그 때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였음.⁴⁾

2026년 현재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면허가 신설되지는 않았고, 현재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

2)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7371호, 2020년 6월 9일 공포, 2020년 12월 10일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로교통법」(법률 제17891호, 2021년 1월 12일 공포, 2021년 5월 15일 시행)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1대 국회 제382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0. 12. 2.) 회의록 39면 박완수 소위원장 발언 내용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보유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02,641명에서 2024년 209,284명으로 매년 1만~2만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9년~2024년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보유자 현황

(단위: 명)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인원 수	302,641	289,232	272,481	251,381	230,900	209,284

출처: KOSIS 운전면허소지자현황(면허종별)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매년 2천여건, 사망자 20여명, 부상자 2,000여명이 발생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사건 발생 수(건)	2,386	2,389	2,232
사망(명)	26	24	23
부상(명)	2,684	2,622	2,486

자료: 경찰청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연령별 가해운전자를 살펴보면 10대가 3,049명(43.5%)이고, 20대가 1,783명(25.4%), 30대가 790명(11.3%) 순임. 15세 이하의 가해운전자는 1,444명(20.6%)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15세 이하	1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불명	합계
2022년	521	511	678	265	181	109	40	50	31	2,386
2023년	462	559	592	264	196	159	77	58	22	2,389
2024년	458	538	513	261	147	146	84	60	25	2,232
합계	1,441	1,608	1,783	790	524	414	201	168	78	7,007
(비율)	20.6	22.9	25.4	11.3	7.5	5.9	2.9	2.4	1.1	100

자료: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9세 이하가 52,534명(55.7%), 20대가 33,467명(35%)를 차지하고 있음.

연령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단속 적발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9세 이하	3,300 (46%)	11,832 (56.2%)	17,889 (56.1%)	19,513 (55.1%)	52,534 (55.7%)
20대	3,035 (42.4%)	7,483 (35.6%)	11,080 (34.7%)	11,869 (33.5%)	33,467 (35%)
30대	464 (6.5%)	1,005 (4.8%)	1,767 (5.5%)	2,207 (6.2%)	5,443 (5.7%)
40대	182 (2.5%)	333 (1.6%)	531 (1.7%)	767 (0.2%)	1,813 (1.9%)
50대	99 (1.4%)	210 (1%)	309 (1%)	450 (1.2%)	1,068 (1.1%)
60대	51 (0.7%)	112 (0.5%)	196 (0.6%)	425 (1.2%)	784 (0.8%)
70대 이상	33 (0.5%)	70 (0.3%)	140 (0.4%)	151 (0.4%)	394 (0.4%)
합계	7,164 (100%)	21,045 (100%)	31,912 (100%)	35,382 (100%)	95,503 (100%)

자료: 경찰청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2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도 35%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의 강화는 20대 무면허 운전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기에 앞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에 단속되는 운전자 중 55.7%가 19세 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현행 수준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선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당초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규격(중량 30kg 미만, 제한 속도 25km/h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등보다 위험성이 낮아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이며,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범칙행위로 규정한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임차인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동 법률 제정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추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